

**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
조례안**
〔고성미 의원 발의〕

1) 입법예고: 2023. 9. 6. ~ 2023. 9. 12.

의안번호	2393
------	------

발의일자 : 2023. 9. 5.
발 의 자 : 고성미 의원
찬 성 자 : 고영찬 의원

1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금천구 내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 및 실태조사(안 제3조 및 제4조)
- 다.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지원사업(안 제6조)
- 라. 위탁 및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(안 제7조 및 제8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기초학력 보장법」 제3조
- 나. 예산조치: 필요시 예산조치
- 다. 기 타

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지원

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내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 신장을 위한 교육환경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학생”이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사람,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.
2.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기초학력 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서울특별시 금천구(이하 “금천구”라 한다) 내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해야 한다.

- ② 구청장은 금천구 내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4조(실태조사) 구청장은 기초학력 보장에 필요한 교육환경 개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.

제5조(차별금지) 구청장은 학생과 그 부모의 출신국가·장애여부·소득

수준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.

제6조(지원사업) 구청장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교육환경과 여건 개선 및 관련 공간 등 지원
2. 교재와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원
3. 관련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·운영
4. 학습지원대상과 그 보호자를 위한 교육 및 상담
5. 그 밖에 기초학력 보장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

제7조(위탁 및 지원) ① 구청장은 제6조 각 호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관련 개인,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- ②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학교, 법인이나 단체 등에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-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와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제8조(협력체계 구축) 구청장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관련기관과 단체 및 지역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 법령

□ 「기초학력 보장법」

[시행 2022. 3. 25.] [법률 제18458호, 2021. 9. 24., 제정]

제3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학교의 장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